

아래 사항은 보험업법 제111조(대주주와 거래제한 등) 제3항, 보험업법시행령 제 57조 및 보험업감독규정 제5-5조에 의한 공시사항입니다.

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

1. 대주주명		(주) 동부하이텍
2. 신용공여내용	신용공여일	- (최초공여일 2004년 6월 10일)
	신용공여종류	신용대출금
	신용공여금액(원)	- (최초공여액 65,000,000,000)
	신용공여총잔액(원)	38,151,000,000
	만기일	2019년 6월 10일
	신용공여금리(%)	기본금리 + 9.535% 주) 기본금리 : 신용등급 A0인 3년 만기 무보증 회사채의 기준수익률로 민간평가사 3사 (나이스채권평가, 한국채권평가, KIS채권평가) 의 평균 채권금리
3. 자금용도		신디케이티드론 참여를 통한 자산운용수익률 제고(본건은 기존 거래에 대한 주요내용의 변경공시임)
4. 이사회결의일		2013년 12월 30일
5. 기타		<p>- 본 건은 주요내용의 변경공시로서, 2004년 4월 9일에 기 체결된 계약과 관련하여 동부하이텍이 신디케이티드론 주관사인 산업은행을 통해 대출조건 변경을 요청함에 따라, 당사는 대주단의 일원(6.24%)으로서 이사회에서 결의함</p> <p>[결의결과] - 아래 의안에 대하여 동의 처리함</p> <p>[부의내용] <input type="checkbox"/> 동부하이텍 신디케이티드론 운영 등 주요사항 변경의 건</p> <p>① 신디케이티드론 계약서에 의거 2013년 재무 약정 조항 미이행에 따른 면책 요청</p>

구분	'13년	
	약정	실적(예상)
부채비율	300%이하	417%
EBITDA/ 총이자비용	3.0 이상	1.57

② 대출계약서 제12조 15항에 의거, 유화공장 매각대금 상환일정(508억원, 2013.12.31限)을 동부그룹 재무개선 자구계획 이행 이후로 연기 요청